전라남도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 수립현황



신 광 식 ㈜유현E&C 수자원부과장 tntls77@navercom

1. 머리말

하천기본계획은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24조 규정에 의거 유역의 강우, 하천의 유량, 수질 및 생태, 하천의 이용현황 등 하천의 치수, 이수, 환경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사 분석하여 하천의 종합정비 및 이용, 자연친화적인 하천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작성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는 해당하천의 종합적인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방향, 홍수처리계획의 기본방향, 유수의 합리적인 이용에 관한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이러한 하천기본계획은 하천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유역면적 합계가 200km² 이상이거나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혹은 유역면적 합계가 50km² 이상이면서 200km² 미만이지만 인구 20

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하거나, 저수량 500만㎡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등 국 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을 국토해양부장 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국가하천과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시ㆍ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지방하천으로 하천을 구분 및 지정하고 하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은 각각 국 토해양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계획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에 대해 대한민국 서남부에 위치한 전라남도의 하천기본계획 수립현황을 전국 시·도별 하천기본계획 수립현황과 비교·분석하여 향후 전라남도 하천관리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하천기본계획 개요

21 하천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하천기본계획은 하천법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하천유역의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등에 대한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공통유역도(이수, 치수, 환경을 고려하여 전국을 권역별로구분한 유역도)를 기본으로 권역별로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가. 하천기본계획의 목표
- 나, 하천의 개황에 관한 사항
- (1) 유역의 특성 등 일반현황
- (2) 강우·기상 등 자연조건
- (3) 하천의 수질 및 생태
- (4) 수해 및 가뭄의 피해현황
- (5) 하천수의 이용현황
- (6) 하천유역의 지형·지물 등을 파악하기 위한 측량기 준점에 관한 사항
- 다. 제방 · 댐 · 저류지 · 홍수조절지 · 방수로 등 홍수방 어시설의 홍수방어계획
- 라.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른 홍수방어계획
- 마. 홍수방어계획의 연차별 시행 방안
- 바.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1) 기본홍수량(제방 · 댐 · 저류지 · 홍수조절지 · 방수로 등 홍수방어시설의 홍수조절계획을 반영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홍수량을 말한다) 및 홍수량의 배분에 관한 사항
- (2) 계획홍수량
- (3) 계획홍수위
- (4) 계획하폭 및 그 선계
- (5) 하도와 유황의 개선
- 사. 하천구역·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의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아,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에 관한 사항

- 자. 폐천부지등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차. 그 밖에 하천의 환경보전과 적절한 이용에 관한 사항
- (1) 보전·복원·친수지구 설정 등 하천의 지구별 관리 에 관한 사항
- (2) 하천기본계획에서 수립된 사업시행으로 생태계 등 화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 (3) 고수부지, 폐천부지 현황 및 활용계획 등 하천의 유 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22 하천기본계획 수립 절차

하천기본계획의 수행 흐름은 유역의 특성 및 현황을 조 사한 후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립하게 된다.

- 가. 하천기본계획(안)에 대한 단계별 의견 수렴
- (1)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 (2)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 (3) 수자원, 환경 등 관련전문가 자문 실시
- 나, 하천기본계획(안)의 마련
- 다. 하천기본계획(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 라. 하천관리위원회 심의
- 마. 하천기본계획 고시
- 바 하천기본계획 보고서 배부

3. 하천기본계획 수립현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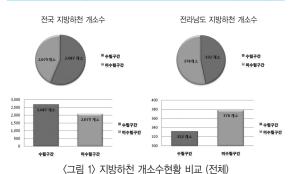
상기에서 기술한 하천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포함하여 수립절차에 의해 고시된 전국의 지방하천을 국가수자원 관리정보시스템(www.wamis.go.kr) 및 하천관리지리정 보시스템(www.river.go.kr) 등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한 국하천일람(2009.12.31, 국토해양부 한강홍수통제소)의 자료를 토대로 현재까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전체자 료와 최근 10년간 수립된 자료로 구분하여 전국 수립현황 과 전라남도 수립현황을 비교·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3.1 현재까지 수립된 하천기본계획 수립현황 비교

현재까지 수립된 전국 시도별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현황과 전라남도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현황을 비교한 결과, 전국 시도별 지방하천 개소수는 3,848개소이며 이중 69.83%인 2,687개소가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전라남도 지방하천 개소수인 555개소 중 59.82%인 332개소가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전국 시도별 지방하천연장은 26,984,29km이며 이중 71.67%인 19,340.09km가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전라남도 지방하천연장인 2,908,54km 중 65.48%인 1,904.37km가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1] 하천개소수 및 연장(전체)

		하천연장								
_	н	계		하천기본계획						
Ť	분			수립구간			미수립구간		비고	
			연장(km)	개소수	연장(km)	수립율(%)	개소수	연장(km)		
	합계	3,932	30,242,93	2,771	22,535.17	74.51	2,080	7,707.76		
시도별	국가	84	3,258.64	84	3,195.08	98.05	5	63,56		
	꺠	3,848	26,984.29	2,687	19,340.09	71,67	2,075	7,644.20		
전라남도	꺠	555	2,908,54	332	1,904.37	65,48	378	1,004.17		



〈그림 2〉 지방하천 연장현황 비교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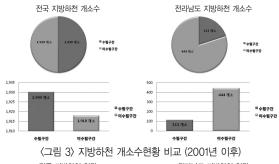
3.2 2001년 이후 수립된 하천기본계획 수립현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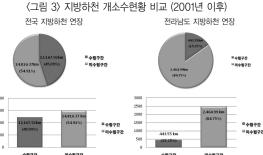
전라남도의 하천기본계획 수립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연장 2,908.54km 중 65.48%인 1,904.37km가 수립되어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하천법 제25조에 의하면 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2001년 이전에 수립되어 있는 하천의 경우 재수립이 필요하므로 2001년 이후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에 대해 전국 수립현황과 전라남도 수립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

2001년 이후 수립된 전국 시도별 지방하천은 1,930개 소로 전체연장대비 45.09%인 12,167,92km로 조사되었고, 전라남도는 111개소로 전체연장대비 15,25%인 443,55km 가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2] 지방하천 개소수 및 연장 (2001 이후)

구분	하천연장							
	계		하천기본계획					비고
			수립구간			미수립구간		미끄
	개소수	연장(km)	개소수	연장(km)	수립율(%)	개소수	연장(km)	
시도별	3,848	26,984.29	1,930	12,167.92	45.09	1,918	14,816.37	
전라남도	555	2,908.54	111	443,55	15,25	444	2,464.99	





〈그림 4〉 지방하천 연장현황 비교 (2001년 이후)



4. 맺음말

본 연구를 수행한 결과 전국 시·도에서 관리하는 지방 하천 연장 중 71,67%가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전라남도는 65,48%로 전국 수립현황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계획 수립연한 인 10년 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전국 시·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 연장중 45.09%가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전라남도의 경우 전체연장대비 15.25%가 수립되어 전국 평균대비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국부적인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의한 홍수피해 증가와 하천 유역내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급격한 개발사업 등을 감안할 때, 전라남도의 경우 우선적으로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하천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하천기본계획을 시급히 시행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정비, 보전, 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국토해양부 한강홍수통제소, 한국하천일람, 2009.12,31 기준.
- 2) 국토해양부, 유역종합치수계획 및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 2008.12.
- 3) 한국수자원학회, 하천설계기준·해설, 2009.
- 4) http://www.law.go.kr
- 5) http://www.wamis.go.kr
- 6) http://www.river.go.kr

